

서울특별시의회
제323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
보호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

2024. 4.

서울특별시의회
최유희 의원(국민의힘, 용산2)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

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최윤희 의원입니다.

□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「서울특별시교육청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된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학교 방문자가 사전에 학교 방문 사실 등을 통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·보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 상위법령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교육장에게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사 등에 따른 책무를 부여하고자 했으며, 교

육감에게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마련 수립하도록 했습니다.

- 상위법 개정으로 변경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